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- 222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-380호(2022. 7. 1.)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변경 사항

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대 표 자	서영수	이명수	

2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